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88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박홍배 · 정혜경 · 이광희
김남근 · 김우영 · 이정현
박 정 · 김한규 · 민병덕
박정현 · 정태호 · 김현정
최혁진 · 박균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특히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음.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 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주로 출연금의 이자수입 등 자체 재원에 의존해 왔음. 그러나 저금리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면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 및 공통경비를 충

당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의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앞으로의 재단 운영과 사업 지속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하고,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정부의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복리향상을 위하여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이하 “에너지복지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에너지복지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에너지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에너지복지 관련 조사·연구
4. 에너지복지 관련 국내외 협력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재생에너지 접근성 개선
7.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한 지역 공공기관·복지 단체 등과의 협력
8.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언
9.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

10.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안전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에너지복지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부는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은 제16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8(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을 위하여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이하 “에너지복지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에너지복지재단은 법인으로 한다.</u> <u>③ 에너지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 <u>1.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u> <u>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u> <u>3. 에너지복지 관련 조사·연구</u> <u>4. 에너지복지 관련 국내외 협력사업</u> <u>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u> <u>6.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u>

재생에너지 접근성 개선

7.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한 지역 공공기관·복지 단체 등과
의 협력

8.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9.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기후
위기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

10.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안전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에너지복지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부는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⑥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
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